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. 8. 20 선고 2015가합77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8. 20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. 12. 2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2 기재와 같다.

### 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(무변론 판결)

재판장판사이상현

판사오소현

판사정지원

별지